

제165회 거창군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

2010. 3. 8. (월) 10:00~

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산업건설위원회

<의안번호 제2010 - 11호>

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0. 2. 11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0. 3. 2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의 개정('07.12.21)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임.

나. 주요내용

-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과 기금의 용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 - 기금의 재원: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균으로 배분되는

수익금과 수수료, 과태료, 이행강제금, 전입금, 국·도비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(안 제2조)

- 기금의 용도: 광고물 등의 정비, 경관 개선,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,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,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,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(안 제3조)
- 기금의 관리: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세입·세출외 현금으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(안 제4조)
-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 - 위원회의 심의 기능: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,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, 그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(안 제5조)
 - 위원회의 구성: 안 제6조
-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· 제12조)
-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조례안은 2007. 12. 21. 『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』 일부 개정 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,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『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

설치 및 운용조례안』을 신규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『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』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.

○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(1) 안 제1조(목적)는 이 조례제정의 목적과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필요조항이며,

(2) 안 제2조(기금의 조성)는 옥외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,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, 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, 국·도비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(3) 안 제3조(기금의 용도), 안 제7조(위원장의 직무), 안 제6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, 안 제8조(회의), 안 제9조(간사 및 수당), 안 제11조(회계관계 공무원), 안 제12조(기금결산), 안 제13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는 이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(4) 안 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)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“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”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호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이고, 제2호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이며, 제3호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으로서 실제 위 각 호의 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서 “안 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)”를 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**설치 및 기능**)로”, “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”를 “**군수는**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한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되, **위원회는**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하여야 한다.” 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(5) 그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5. 토론요지 : 생략.

6. 수정안 요지

○ 제 5조 조례의 세부내용을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“설치”와 “기능”에 대한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”를 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”으로 그 제목을 수정하고,

-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제목에 맞도록

“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”를 “군수는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한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되,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.” 로 수정.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생략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수 정 안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)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	<p>제5조(-----설치 및 기능)군수는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한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되,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.</p> <p>1.~3. (제정안과 같음)</p>